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안금희 소유물건(2025타경1151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경식

감정평가서번호: sm202503-0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조원제

조원제



감정평가액	이억일천삼백구십사만팔천원정 (₩213,948,00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경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울산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안금희 (2025타경11510)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31	2025.03.31	2025.04.0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23	토지	123	985,000	121,155,000
	건물	130.99	건물	130.99	700,000	91,693,000
제시외건물	(6.30)	제시외건물	6.30	-	1,100,000	
합 계					₩213,94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소재 “남부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울산지방법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개요

1) 평가대상 토지(경상남도 양산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01.01. 개별지가 (원/㎡)	비고
1	남부동 255	대	123.0	단독	2종 일주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579,600	-

2) 평가대상 건물(경상남도 양산시)

기호	소재지	구조	층수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
2	남부동 255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30.99	1996.11.25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03.31.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03.31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5.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방식

- ▶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임.
- ▶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며 공시지가기준법 역시 비교방식에 포함됨.
- ▶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임.

3) 토지의 감정평가

가. 적용규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공시지가기준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다.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라.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시산가액을 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건물의 감정평가

가. 감정평가방법 적용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건물은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함.

나. 적용 감정평가방법

- ▶ 원가법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 시산가액 조정 : 건물은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건물만의 거래사례 포착 및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주된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기로 함.

5) 제시외 건물의 감정평가

제시외 건물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되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6.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와 현장실사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2) 본건 '담보 감정평가서(대한감정 ' 220506-18-0011호 ', 기준시점 2022.05.09.일자)'에 따르면 본건 건물의 경우 2021년 4월경에 내부 대수선이 이루어진 바 내용년수 조정을 통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본건 건물을 감정평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본건은 후첨 '사진용지 및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 ㄴ이 소재 하나 그 규모, 용도, 구조 등으로 보아 본건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보이므로 이를 평가에 포함하였으며, 당해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본건 제시외 ㄱ, ㄴ(다용도실)의 경우 그 구조, 규격 및 면적 등은 현장실사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를 통해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 1번 토지의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 및 '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서 보듯이 제시외 수목인 조경수(두릅나무, 대추나무 등 10여주 이내)가 소재하나, 소량, 소액의 부합물로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토지의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내부조사가 불가하여 부득이 외부관찰,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인근주민의 탐문내용 및 유사 사례의 감정평가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내부구조, 이용상황, 관리상태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6) 본건 평가에 사용된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번을 '**' 처리 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출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하기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나.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경상남도 양산시)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남부동 392-2	대	121.0	단독	2종 일주	세로 (가)	가장형 평지	610,300	-

▶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의 표준지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경상남도 양산시 주거지역]

기 간	지 가 변 동 률 (%)	비 고
25.01.01 ~ 25.03.31	(0.238%) 1.00238	2025.01.01 ~ 2025.02.28 : 0.154 2025.02.01 ~ 2025.02.28 : 0.076 (1+0.00154)*(1+0.00076*31/28) ≒ 1.00238

- ▶ 2025년 0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로 2025년 02월분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동일수급권내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 대등(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구 분	항 목	세 부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일조, 조망, 경관,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시설 등	상하수도, 도시가스, 변전소 등의 유무
획지조건	면적, 접면, 형상, 방위, 고저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의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 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나.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비 교 항 목						격차율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1	A	1.00	1.00	1.00	0.97	1.00	1.00	0.970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경사 등 획지조건에서 다소 열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 [2003다 38207(2004.05.14. 선고), 2002두5054(2003.07.25. 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기로 함.

나. 비교 거래사례(경상남도 양산시)

[출처 :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매매금액 (원)	거래시점
가	남부동 ***-*	대	101.0	단독	2종 일주	125,000,000	2025.01.24

다. 평가전례(경상남도 양산시)

[출처 : KAPA HUB]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목적	비고
a	중부동 ***-**	대	191.0	단독	2종 일주	1,300,000	2023.12.22	담보	선정
b	남부동 ***-*	대	152.0	단독	2종 일주	824,000	2023.10.05	담보	-
c	남부동 ***-*	대	111.0	주상용	2종 일주	1,270,000	2022.06.09	담보	-
d	중부동 ***-*	대	164.0	주상용	2종 일주	1,410,000	2022.03.04	일반거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위치	구분	가 격 수 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제2종주거지역 본건과 유사	본건 인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및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본건과 유사한 토지의 지가수준은 약 @900,000원/㎡ ~ @1,100,000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위치, 접면도로의 상태, 면적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마. 평가대상 지역의 경매통계 분석

[출처: 법원경매정보 매각통계 참조]

구분	소재지	기간	매각율(%)	매각가율
단독주택	경상남도 양산시	최근 1년	25.9	59.0
다가구주택			50.0	65.1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산정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 \text{평가전례(거래사례)토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
 &= && \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text{요인 보정치} &&
 \end{aligned}$$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구 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전례a	1,300,000	1.01218	1.00	0.773	1,017,139	1.662	
표준지A	610,300	1.00238	1.00	1.000	611,752		
시점수정	경상남도 양산시 주거지역(23.12.22 ~ 25.03.31) -2023.12.01 ~ 2023.12.31 : 0.043 -2024.01.01 ~ 2024.12.31 : 0.963 -2025.01.01 ~ 2025.02.28 : 0.154 -2025.02.01 ~ 2025.02.28 : 0.076 $(1+0.00043*10/31)*(1+0.00963)*(1+0.00154)*(1+0.00076*31/28) \approx 1.01218$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요인 대등						
개별요인	가 로	접 근	환 경	획 지	행 정	기 타	계
	0.75	1.00	1.00	1.03	1.00	1.00	0.773
- 비교표준지는 평가전례 대비 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등 제반 가로조건에서 열세 - 비교표준지는 평가전례 대비 경사 등 획지조건에서 다소 우세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전례,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66으로 결정함(1.66).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구 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610,300	1.00238	1.00	0.970	1.66	985,043	98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출

가) 평가개요

본건 토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 선정사유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하기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 비교 거래사례(경상남도 양산시)

[출처 :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매매금액 (원)	거래시점
가	남부동 ***-*	대	101.0	단독	2종 일주	125,000,000	2025.01.24
<p>▶ 사례건물 내역 :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연면적 59.58㎡, 1985.04.02.일자 사용승인</p> <p>▶ 건물가격의 산정 : (@1,300,000원/㎡ * 11/50) * 59.58㎡ ≒ 17,039,880원</p> <p>▶ 토지단가산정 : (125,000,000원 - 17,039,880원) / 101.0㎡ ≒ @1,068,912원/㎡</p>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 거래사례의 경우 인근 유사부동산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1.00).

라) 시점수정

[경상남도 양산시 주거지역]

기 간	지 가 변 동 률 (%)	비 고
25.01.24 ~ 25.03.31	(0.180%) 1.00180	2025.01.01 ~ 2025.01.31 : 0.078 2025.02.01 ~ 2025.02.28 : 0.076 $(1+0.00078*8/31)*(1+0.00076)*$ $(1+0.00076*31/28) \approx 1.00180$

- ▶ 2025년 0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로 2025년 02월분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지역적인 제요인 대등(1.00).

바.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상기 개별요인 비교항목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번호	비 교 향 목						격차율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1	1.00	1.00	1.00	0.97	1.00	1.00	0.970
-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경사 등 획지조건에서 다소 열세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구 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068,912	1.00	1.00180	1.00	0.970	1,038,710	1,040,000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적용단가의 결정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본건 감정평가에서는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 토지의 적용단가를 결정함.

2)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조정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985,000	1,040,000	98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토지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 고
1	123.0	985,000	121,155,000	-

Ⅲ. 건물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함.

2. 건물의 현황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55	건 물 명	—
구 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규 모	지상 2층
용 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1996.11.25
설 비 등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상·하수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갖추었음.		
기 타	▶ 제시외건물 ㄱ. 샷시조 슬래브지붕 1층 소재(다용도실) : 약 2.7㎡ ㄴ. 샷시조 슬래브지붕 2층 소재(다용도실) : 약 3.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재조달원가의 산정

1) 표준단가의 산정

[참조 : 한국부동산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 2024]

구 분	용 도	구 조	급 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1-1-2-5	일반주택	조적조(시멘트벽돌) 슬래브위시멘트기와잇기	3	1,855,000	45 (40~50)
1-1-2-5	일반주택	조적조(시멘트벽돌) 슬래브위시멘트기와잇기	4	1,569,000	45 (40~50)
1-1-4-5	일반주택	조적조(시멘트블록) 슬래브지붕	5	1,185,000	40 (35~45)

2) 부대설비 보정단가의 산정

본건 부대설비는 건물 재조달원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재조달원가의 결정

본건 건물의 재조달원가(표준단가 + 보정단가)는 상기 한국부동산원 발간 2024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조하되,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 및 마감자재의 수준, 기본 설비의 사양 등 건축비 관련 사항과 인근 유사 건물의 평가시 적용한 단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하기와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구 분	기초재조달원가 (원/㎡)	부대설비보정단가 (원/㎡)	적용재조달원가 (원/㎡)	비고
2	1,400,000	-	1,400,000	단독
제시외 가, 나	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감가, 기능적감가 또는 경제적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및 관찰감가법이 있는 바 본건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하기와 같이 감가수정하였음.

또한 본건 건물의 경우 2021.04월경에 내부 대수선이 이루어진 바 이를 감안하여 내용연수 조정을 통한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평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제시외건물의 경우 역시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구 분	기준시점	사용승인일자	경과연수	잔존연수	내용연수	비 고
2	2025.03.31	1996.11.25	25	25	50	내용연수조정
제시외 ㄱ,ㄴ	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5. 건물가액의 결정

1) 건물단가의 산정

구 분	재조달원가 (원/㎡)	잔존가치율	적용단가 (원/㎡)	비 고
2	1,400,000	25/50	700,000	관찰감가
제시외 ㄱ,ㄴ	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관찰감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건물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	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2	130.99	700,000	91,693,000
제시외건물 ㄱ	2.7	식	500,000
제시외건물 ㄴ	3.6	식	600,000
소계			1,100,000
합계			92,79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결정의견

상기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가액,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 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본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기 호	면적(㎡)	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토지	1	123.0	985,000	121,155,000
건물	2	130.99	700,000	91,693,000
소 계				212,848,000
제시외건물 ㄱ	ㄱ	2.7	식	500,000
제시외건물 ㄴ	ㄴ	3.6	식	600,000
소 계				1,100,000
합 계				213,948,00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55	대	2층일반주거	123	123	985,000	121,155,000	
2	동 소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5길 28-4	255 위지상	단독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2층	67.65 63.34	130.99	700,000	91,693,000	1,400,000 x 25/50 관찰감가
소 계								₩212,848,000	
ㄱ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55 위지상	다용도실	샷시조 스라브지붕 1층 소재	(2.7)	2.7	식	500,000	관찰감가
ㄴ	동 소	255 위지상	다용도실	샷시조 스라브지붕 2층 소재	(3.6)	3.6	식	600,000	관찰감가
소 계								₩1,100,000	
합 계								₩213,948,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소재 "남부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및 각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 ~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 외벽 : 연와조적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바름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2중창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상하수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나방설비, 전기설비 등 갖추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에서 보듯이 제시외 ㄱ, ㄴ(다용도실)이 소재하나, 이는 본건 건물의 부합물 내지는 종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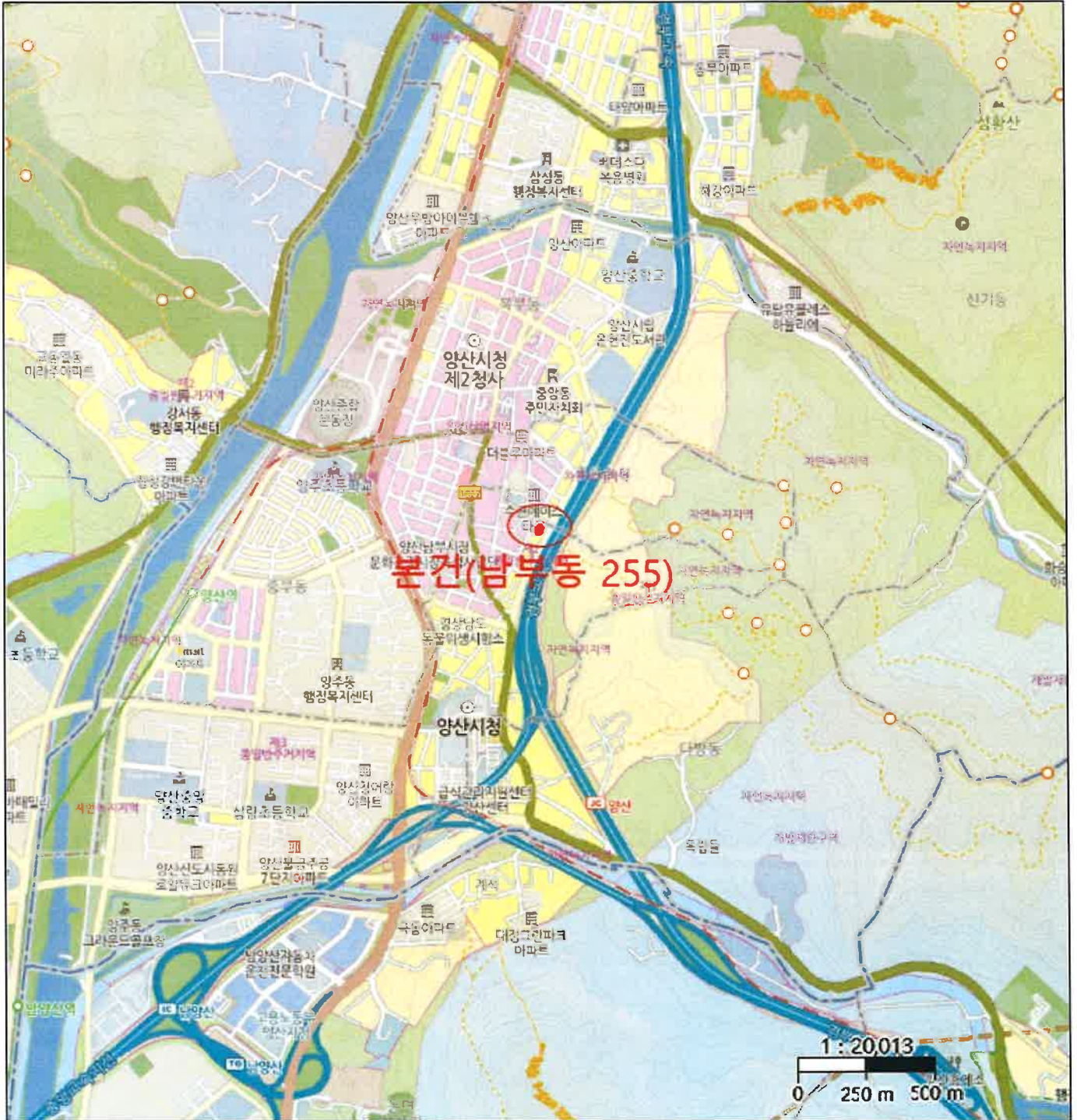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담보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 건물의 경우 1996.11.25일자로 사용 승인되었으나, 2021.04월경에 내부 대수선을 하였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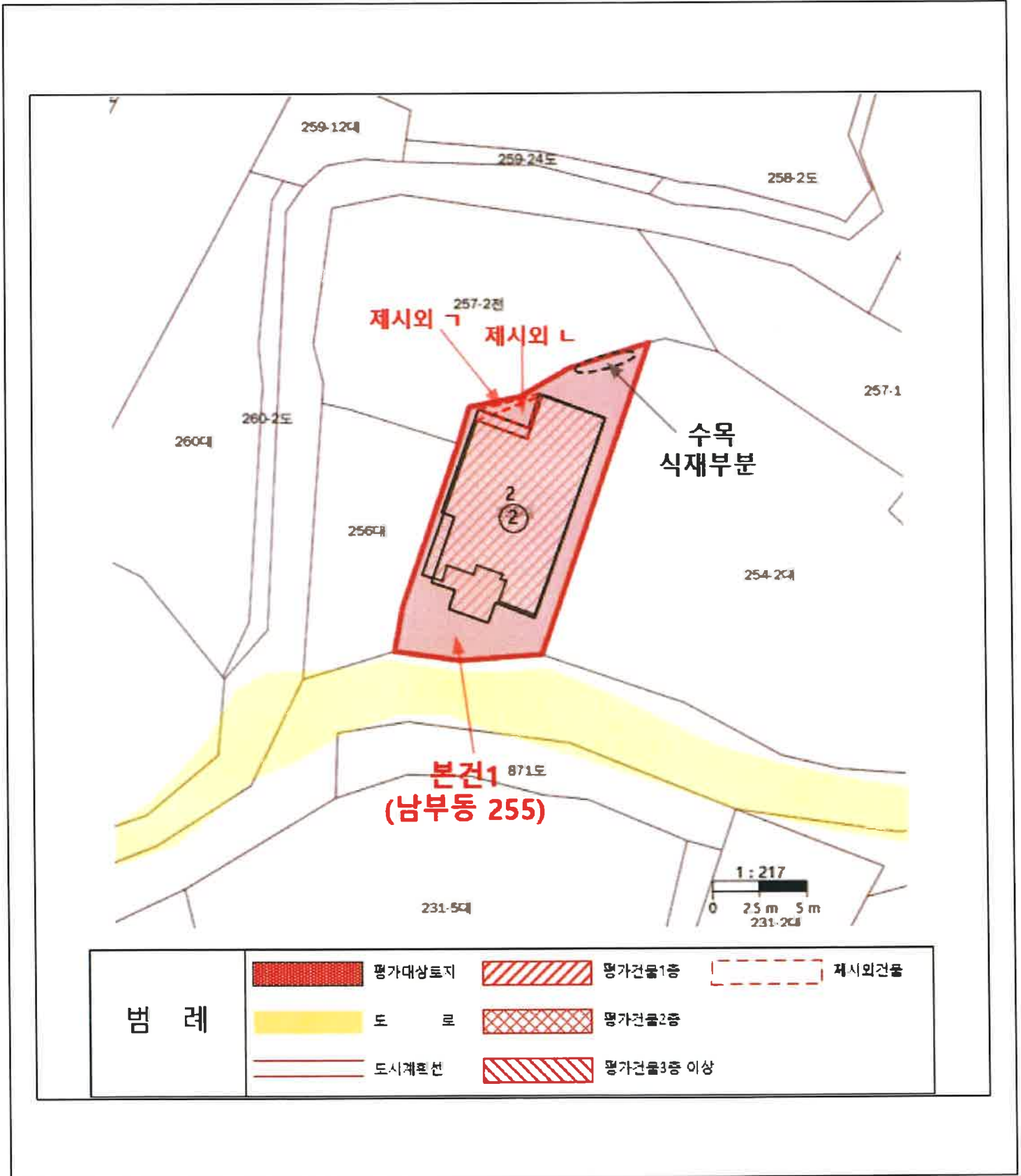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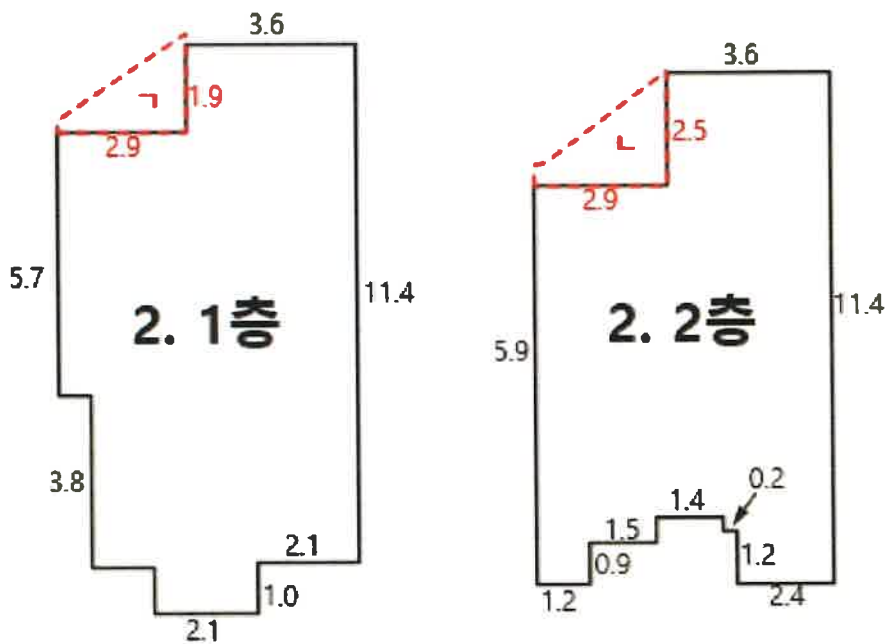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255
-----	------------------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건물면적 산출근거]

2. 1층 : 공부면적 67.65m²
 2. 2층 : 공부면적 63.34m²

[제시 외 건물]

- ㄱ. 샷시조 스라브지붕 1층 소재(다용도실) : 약 2.7m²
 ㄴ. 샷시조 스라브지붕 2층 소재(다용도실) : 약 3.6m²

사 진 용 지



본건 및 접면도로



본건 전경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제시외 ㄱ, ㄴ



제시외 ㄱ, ㄴ



제시외 수목